

[별표 10] <개정 2005.8.5>

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53조제3항관련)

위 반 행 위	근거법조문	과태료금액
1.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2. 법 제3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 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3. 법 제3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 57조제1항제1호	100만원
4. 법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.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	법 제 57조제1항제2호	
(1)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		50만원
(2)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		100만원
(3)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		300만원
(4)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		500만원